

업무지침 포스코오앤엠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2009.10.1	Page:1/5 Rev. : 10
-----------------------	----------------------	----------------	-----------------------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포스코오앤엠(이하 "당사"라 한다)의 협력사 등록 및 평가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협력사란 계약을 위한 협상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제반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이하“협력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소싱그룹이란 회사의 본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공사, 보수, 자재 등의 분야에 공급시장, 물품특성 및 계약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구매단위를 말한다.

③평가분석이란 작업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기준으로 협력사를 우수, 양호, 미흡 등으로 평가함을 말한다.

④총괄부서는 계약관리부서인 구매협력섹션으로 하며, 주관부서는 사업소 계약부서, 운영부서는 사업소 현장부서(시설팀 등)를 말한다.

⑤전자계약시스템이란 회사의 협력작업, 구매업무 등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싱그룹 관리, 가견적, 입찰, 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인터넷(<http://epro.poscoonm.com>)을 통해 접속한다.

제3조(소싱그룹) ①모든 협력계약은 소싱그룹에 등록된 협력사를 최우선하여 검토한다.

②소싱그룹은 협력작업성격에 따라 용역, 공사, 유지보수, 자재로 구분하고 불임 #1과 같이 대, 중, 소의 3단계 카테고리로 세분화 관리한다.

③협력사는 등록업종에 한하여 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가능하며, 단일업체가 2개이상의 카테고리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복수 등록이 가능하다.

제2장 등록대상업체 심사기준

제4조(신규등록 신청 및 취소) ①등록대상 협력사는 해당 작업의 전문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보유업체에 한한다.

②정기등록 및 갱신시기는 매년 5월이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시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 전결로

업무지침 포스코오앤엠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2009.10.1	Page:2/5 Rev. : 10
-----------------------	----------------------	----------------	-----------------------

총괄부서에 협력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③거래를 희망하는 협력사는 회사가 지정한 서식과 절차에 의거,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총괄부서장은 협력사 등록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반려 시 사유를 기재하여 거절하거나, 해당업체에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총괄(주관)부서는 협력사 모집 및 등록신청 시 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등록 자격, 절차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15일 이상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총괄부서는 기준을 변경할 경우 갱신대상 업체에 대하여 30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총괄부서는 등록을 취소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즉시 통지하고, 해당 협력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제5조(심사방법)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병행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등 공급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방문일정을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심사대상) 등록을 신청한 협력사 또는 계약부서장이 신규업체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심사주관) 총괄부서는 등록유무에 대한 결과를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메일 등으로 협력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 기준은 붙임 #4와 같으며,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심사절차) ①등록희망 협력사는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정보 제출시 붙임 #4에 의거하여 자기평가를 정확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배포한다.

②총괄부서는 제출된 심사평가와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합격 판정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협력사로 등록한다.

③총괄부서장은 등록심사결과를 문서화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판정 기준) ①총괄부서는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합격판정하여 정식협력사로 등록한다.

②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주관(운영)부서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임시협력사로 한시적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단, 특별요청 시 주관(운영)부서는 합리적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협력사의 조건부등록약약서(붙임 #5)를 첨부하여 해당 임원의 전결로 총괄부서에 요청한다.

③임시협력사 거래범위는 해당 1회성 계약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 건으로 반복적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업무지침 포스코오앤엠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2009.10.1	Page:3/5
			Rev. : 10

유예기간내(최대 2년)에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협력사로 승격이 어려울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등록대상 협력사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 등록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보유면허 사본, 신용평가서 등 포함)
- 거래대금 결제계좌 등록신청서(붙임 #6)

제12조(등록업체 관리) ①작업을 위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거나 세금 미납, 신용등급이 D급 이하인 업체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는 계약 시 과당경쟁 소지가 있거나 기타 계약여건상 등록업체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평가 실시 후 일부 업체를 삭제할 수 있다.

③등록업체가 2년간 건적제출, 입찰참여,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는 소싱그룹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④과거 협력사 등록 실적이 있으나, 삭제 후 다시 등록을 원할 경우, 신규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평가를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제재기준) [아래 표]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 행위를 한 협력사는 발생 즉시 해당 계약 건을 해지하고 등록에서 삭제한다. 또한, 제재기간 동안 입찰대상 업체로서의 자격을 취소하며, 동 업체가 새로운 입찰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신규 업체와 동일조건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제재기준>_

구분	심사항목	제재기간
계약불이행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 오투찰 제외)	1년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부당 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3개월 2년
	○30일 이상 지체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계약체결후 소재수급 곤란 등 고의성 없는 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 납품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포스코O&M 사업장 내에서 재해를 발생 시킨 자 - 아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년 6개월

	- 일반(치료기간 4일 이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경미(치료기간 4일 미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3개월
부정당 행 위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설비 및 기기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한 경우	3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자산을 무단반출 한 경우	3년
	○악의성 투서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3년
	○입찰담합을 주도한 경우	3년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1년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타사의 계약에 상호를 빌려준 경우	1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년
	○매수인의 입찰, 협상, 견수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약이행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1~2년
	○비윤리행위 시 - 1백만원 이상의 금전,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 1백만원 미만의 금전,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타의로 금전,금품을 제공한 경우 - 자기의사로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 -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	5년 3년 3년 3년 1년

제3장 협력작업 평가 시행

제14조(평가대상) ①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용역, 정비, 공사, 물품의 공급을 수행하는 협력사 중 1회 거래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1.1>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허공법에 의하여 협력용역·정비·공사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재료비, 단순비용보상, 해외로 발주되는 작업
3. 임대차, 자문, 컨설팅, 회계일반, 설계, 감리, 시운전, 제작검정, 비파괴 검사, 측량, 지질조사

③본조의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총괄부서장은 평가대상업체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1.1>

제15조(평가시기) ①용역, 정비, 공사, 물품의 공급을 수행하는 협력사의 품질평가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단, 1회 정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준공·납품완료 및 최종정산 시에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용역/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완료 및 대금정산 시 ▪ 장기계약 및 분할정산일 경우에는 각 정산 시
-------	---

업무지침 포스코오앤엠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2009.10.1	Page:5/5
			Rev. : 10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및 대금정산 시 ▪ 장기공사일 경우 기성청구 시
자재/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완료 및 대금정산 시 ▪ 실적 정산일 경우에는 각 정산 시

②협력사의 종합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한다. 단,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본조개정 2020.1.1]

제16조(평가주관) 협력사 품질평가는 운영부서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단, 필요 시 평가 대상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1]

제17조(평가기준) ① 품질평가는 품질평가서 첨부양식(붙임 8)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단, 운영부서 및 총괄부서와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평가항목은 운영부서장의 승인 하에 일부 조정, 변경, 제외, 추가가 가능하다.

② 종합평가는 품질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본조개정 2020.1.1]

제18조(평가절차) ① 운영부서는 각 항목별로 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점수별로 정해진 해당등급을 부여한다.

- S : 95 이상, A : 90 이상, B : 80 이상, C : 70 이상, D : 69이하

② 운영부서는 품질평가결과를 협력사에 통보하며, 작업(납품)완료 및 준공 보고 시 품질평가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주관부서는 연간 1회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는 품질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점수별로 제1항에서 정해진 해당등급을 부여한다.

④ 주관부서는 종합평가결과를 협력사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며, 협력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5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협력사에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0.1.1]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평가등급은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평가등급별 Incentive와 Penalty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Incentive와 Penalty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1.1>

등급	인센티브 및 페널티
----	------------

업무지침 포스코오앤엠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2009.10.1	Page:6/5
			Rev. : 10

S등급	대금 전액 현금결제,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수보증보험 각서로 대체
A등급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수보증보험 각서로 대체
B등급	-
C등급	경고 및 개선계획서 제출 / 2년 연속 C등급일 경우 거래제한 1년
D등급	소싱그룹 퇴출

②거래를 제한한 경우 대상 업체가 없거나 경쟁유도 등 제반 여건상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참여시킬 수 있으며, 신규업체 발굴 시까지 그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총괄(주관)부서는 평가결과를 타 제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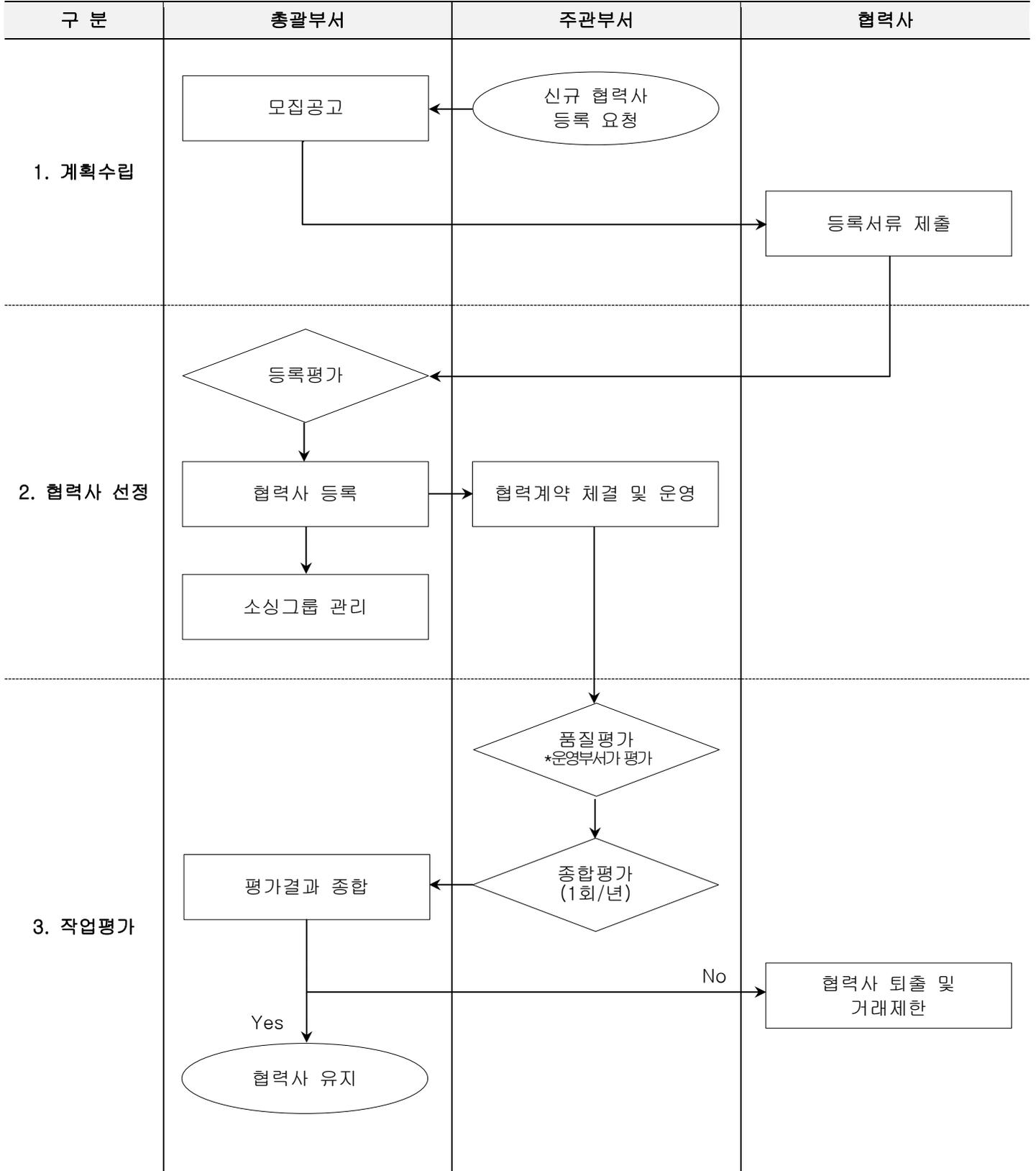
부 칙

1. 이 지침은 2009년 10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협력작업 수행회사 제재기준은 본 지침의 시행년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제재적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폐지한다. 또한, 기존의 제재기준과 본 지침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특허공법에 의하여 협력용역.정비.공사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돌발사고 복구.도급사의 긴급한 요청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업체등록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4.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자체관리 한다.
 - 가. 연간계약에 의한 작업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업체
 - 나. SPOT 계약에 의한 작업으로 연간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업체
 - 다. 연간 1회성 작업 및 물품공급 업체
5. 이 지침은 2010년 5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지침은 2010년 7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이 지침은 2010년 1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8. 이 지침은 2010년 12월 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9.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0. 이 지침은 2018년 9월 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1. 이 지침은 2019년 1월 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2.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3. 이 지침은 2020년 6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4. 이 지침은 2021년 3월 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붙임 #1. 소싱그룹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용역	시설관리	빌딩 시설 유지·보수, 플랜트 시설 유지·보수, 플랜트 시운전 등
	보안관리	경비, 주차, 안내 등
	미화관리	청소, 방역, 세탁 등
	환경관리	오폐수 관리, 폐기물 수거, 대기·수질 등 측정 등
	분양관리	분양대행, 분양광고대행, 분양행사대행 등
	입주관리	아파트, 오피스텔 등 하자관리, 사전점검 등
	코스관리	골프장 코스관리
	기타	전문자문(회계, 법률 등),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사	종합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전문건설공사	토공사, 습식·방수공사, 도장공사, 포장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등
	정보통신공사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
	전기공사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건축설계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 설계
	기타	기타 공사
정비	기계설비	열원설비, 공조설비, 중수·오수·시수·하수 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각, 발전 등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조명설비 등
	제어설비	관제설비, FMS, 주차관제, CCTV, 전관방송, 원격검침, TMS 등
	토건설비	건축설비, 창호/유리, 출입문·셔터, 커튼월, 타일·석재관리, 금속구조물, 바닥재, 방수도장, 하수관거 등
	방재설비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스프링쿨러, 화재탐지설비), 제연, 경보, 피난설비, 무전설비 등
	승강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곤도라 등
	영선	건물/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수리 등
	세관/세척	보일러 세관, 카펫 세탁, 외벽 세척, 저수조 청소 등
	점검/검사	건축물 점검, 설비 점검, 법정 검사 등
	기타	기타 유지보수
자재	설비자재	건물/시설관리자재, 기계·전기 설비자재, 유동사, 화학약품, 유류 등
	공사자재	공사자재, 안전용품 등
	체육용품	골프채, 골프공 등
	식자재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기타	기타 자재, 상품

협력사 등록 및 운영 프로세스



협력사 등록 신청서

[목 차]

1. 등 록 원

2. 회사현황

3. 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보유면허증 사본
- 신용평가보고서 (신용평가기관 발급)
- 실적증명서 (해당기업 발급)
- 납세완납증명서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必

협력사 등록원

【 】 분야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귀사의 협력사에 등록하고자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포스코오앤엠 귀중

회 사 현 황

1. 회사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자 본 금	
주 소		종업원수	
전화 번호		FAX번호	
e-mail		핸드폰	
업 종		업 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경영진의 구성】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경 력	비 고

【면허 보유 현황】

보유면허	면허번호	면허일자	만료일자	시공능력	비 고

【연 혁】

년 월 일	내 용

【상별 사항】

년 월 일	종 류	수 여 기 관	비 고

4. 장비보유현황

장 비 명	규격 및 사양	수량	구입년도	비 고

5. 기술자 보유 현황

자 격 분 야	등 급	인 원	비 고

※ 자격증명서류 첨부

등록대상업체 자기평가 SHEET

등록판정	적격	√ 체크	부적격	√ 체크
-------------	-----------	------	------------	------

구분	평가내용	배점			평점
		용역	정비	공사	평점
경영기반 평가	외부 공인신용평가기관 발행 신용등급	30	20	20	
	▶신용등급 A급인 경우	30	20	20	
	▶신용등급 B급인 경우	20	10	10	
	▶신용등급 C급인 경우	10	5	5	
사업실적 평가	해당작업에 대한 우리회사 및 타사 작업실적	70	50	50	
	▶실적 연간10억 이상이며 작업경험 5년 이상	70	50	50	
	▶실적 연간5억 이상이며 작업경험 3년 이상	60	40	40	
	▶실적 연간3억 이상이며 작업경험 2년 이상	50	30	30	
	▶실적 연간1억 이상이며 작업경험 1년 이상	40	20	20	
작업수행 능력	고용직원의 기술 자격보유 비율	-	30	30	
	▶30% 이상	-	30	30	
	▶15% 이상	-	20	20	
	▶15% 미만	-	10	10	
☞ 동반성장 실적(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개선 등) 제출 시 +5점					
계		100	100	100	

※등록제한

○ 세금미납 및 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신용등급 D급 이하인 경우

협력사 조건부등록 약약서

회 사 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자기평가점수	
반 려 사 유	
등록유효기간(최대2년)	년 월 일
주거래 사업장	

본인은 귀사의 협력사로 등록함에 있어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정식등록할 수 없으나 거래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과 유효기간내 등록요건을 갖추고 정식협력사로 승격될 것을 전제로 임시협력사 등록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유효기간 중 비윤리 등 거래중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유효기간 내 정식협력사 승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귀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약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포스코오앤엠 대표이사 귀중

품질평가서

일반용역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5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2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작업품질	용역수행에 대한 품질수준	2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용역수행방법	용역수행방법 효율성 및 인력/자재 투입의 적정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25)	작업인력관리	근무복장, 근무태도, 근무자격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현장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안전장비 비치상태, 폐기물 처리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지침관리	매뉴얼 보유 및 준수여부, 현장적합여부, 내용 실효성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작업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5	주기 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미작성		
일반 관리 (25)	안전사고빈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고객불편/ 민원제기빈도	고객 불편 및 민원제기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법규위반빈도	관계법령 위반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지시업무 이행, 긴급작업 수행, 대민·대관업무 수행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설비유지관리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5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1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장애발생빈도	장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장애 등급	장애 경중	10	없음	경미	보통	중요	심각		
	장애복구 신속성	장애발생/이상발견 시 초기 대응시간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기술 지원	전문기술/전문인력/장비지원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25)	작업현장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안전장비 비치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자재/장비관리	자재품질수준, 장비 관리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인력관리	근무태도, 근무복장, 근무자격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지침관리	매뉴얼 보유 및 준수여부, 현장적합여부, 내용 실효성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작업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5	주기 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미작성		
일반 관리 (25)	안전사고빈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고객불편/ 민원제기빈도	고객 불편 및 민원제기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법규위반빈도	관계법령 위반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지시업무 이행, 긴급작업 수행, 대민·대관업무 수행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공사(보수)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공정 관리 (35)	공기관리	공기 준수여부	10	단축	준수	3%이하 지연	3%초과 지연	5%초과 지연		
	현장감독관리	현장책임자 배치여부 및 작업관리 수준	10	상주	작업시 배치	비정기 배치	요청시 배치	관리 미흡		
	공정관리	공정계획표 등 공정 관련서류 작성 및 보고, 기성 보고 등	5	주기 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미작성		
	자재(장비)관리	공사자재 품질수준 및 관리상태, 자재관리대장 유무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환경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폐기물 처리 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품질 관리 (25)	도면/시방서 준수	도면/시방서 내용과 작업결과 불일치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하자발생 빈도	하자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기술/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등 작성/적정/준수 여부, 전문기술/인력/장비 조달 수준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안전 관리 (20)	안전활동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안전조직운영, 안전장비 비치상태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안전사고 빈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일반 관리 (20)	고객불편/ 민원제기빈도	고객 불편 및 민원제기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법규위반빈도	관계법령 위반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지시업무 이행, 긴급작업 수행, 대민·대관업무 수행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자재/상품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7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구매요청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2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납기준수	납기일 준수여부	20	단축	준수	1일 지연	2일 지연	3일 이상		
	부적합품 발생	부적합품 발생 비율	20	없음	3% 이하	5% 이하	10% 이하	10% 초과		
	부적합품 처리 신속성	교체/반품 처리 시간	10	1일 이내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7일 초과		
일반 관리 (30)	납품 관련 대응	견적, 주문, 배송, 반품 등 관련 요청/불편사항 처리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법규위반빈도	관계법령 위반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협조업무 이행, 긴급납품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미화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50)	계약 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로비 청결상태	먼지제거, 물기제거, 얼룩제거, 약취제거, 휴지통 청소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계단, 복도 청결상태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화장실 청결상태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기타(사무실, 외곽, 주차장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25)	작업인력관리	근무태도, 근무복장, 근무자격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현장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안전장비 비치상태, 폐기물 처리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청소용품관리	청소용품 보관상태, 창고정리, 불출대장관리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지침관리	매뉴얼 보유 및 준수여부, 현장적합여부, 내용 실효성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작업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5	주기 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미작성		
일반 관리 (25)	안전사고빈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고객불편/ 민원제기빈도	고객 불편 및 민원제기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법규위반빈도	근로기준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지시업무 이행, 긴급작업 수행, 대민·대관업무 수행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보안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55)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보안사고빈도	테러, 도난, 기밀사항 유출, 무단출입 등 보안사고 발생건수	1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상황대응신속성	긴급상황 발생 및 이상 발견 시 초기 대응시간	10	5분 이내	10분 이내	15분 이내	60분 이내	60분 초과		
	상황보고신속성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신고시간	5	5분 이내	10분 이내	15분 이내	60분 이내	60분 초과		
	감시체계	24시간 감시상황, 감시 및 순찰 사각지대 유무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출입관리	출입문 잠금관리, 물품 반출입 통제, 방문객 응대서비스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20)	작업인력관리	근무태도, 근무복장, 근무자격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보안장비 관리	보안장비/장구류 보관상태, 관리대장 유무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지침관리	매뉴얼 보유 및 준수여부, 현장적합여부, 내용 실효성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보안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5	주기 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미작성		
일반 관리 (25)	안전사고빈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고객불편/ 민원제기빈도	고객 불편 및 민원제기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법규위반빈도	관계법령 위반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지시업무 이행, 긴급작업 수행, 대민·대관업무 수행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조경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5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1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수목관리	예초, 제초, 시약, 시비, 관수, 전지, 오염물질 제거상태, 병해충 방지, 혹서/혹한 대비 상태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화분/화단관리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녹지(잔디 등) 관리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조경시설물관리	유지보수상태, 청결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25)	작업현장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안전장비 비치상태, 폐기물 처리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자재/농약/장비 관리	자재/농약/장비 보관상태, 창고 정리상태, 불출대장관리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인력관리	근무태도, 근무복장, 근무자격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지침관리	매뉴얼 보유 및 준수여부, 현장적합여부, 내용 실효성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작업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5	주기 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미작성		
일반 관리 (25)	안전사고빈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고객불편/ 민원제기빈도	고객 불편 및 민원제기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법규위반빈도	관계법령 위반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지시업무 이행, 긴급작업 수행, 대민·대관업무 수행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방역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5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2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방역소독상태	해충/쥐/바퀴벌레 발생여부 등	2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방역수행방법	방역수행방법 효율성 및 인력/ 자재 투입의 적정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25)	작업인력관리	근무복장, 근무태도, 근무자격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현장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안전장비 비치상태, 약취관리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약품/장비 관리	약품/장비 보관관리상태, 사용이력관리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지침관리	매뉴얼 보유 및 준수여부, 현장적합여부, 내용 실효성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방역소독 작업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등	5	주기 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미작성		
일반 관리 (25)	안전사고빈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고객불편/ 민원제기빈도	고객 불편 및 민원제기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법규위반빈도	관계법령 위반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지시업무 이행, 긴급작업 수행, 대민·대관업무 수행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코스관리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5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Green 관리	잔디 색/밀도/균일성/평탄성/질감/경도/탄력성, 뿌리상태, 토양상태, 병해충/잡초 여부, 볼 마크 수리상태, divot 관리, 스캘핑 여부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Teeing Ground 관리	잔디 색/밀도/균일성/평탄성, 뿌리/토양상태, 병해충/잡초 여부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Fairway 관리	잔디 색/밀도/균일성/평탄성, 뿌리/토양상태, 병해충/잡초 여부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Rough/Apron/ Collar/Bunker 관리	잔디 색/밀도/균일성/평탄성, 뿌리/토양상태, 병해충/잡초 여부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수목관리	시약, 시비, 관수, 전지, 병해충 방지, 흑서/흑한 대비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25)	작업현장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안전장비 비치상태, 폐기물 처리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자재/농약관리	자재/농약 관리상태, 창고정리 상태, 불출대장관리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장비관리	장비 고장 및 수리 발생건수 (노후화에 따른 고장 제외)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작업인력관리	근무태도, 근무복장, 근무자격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작업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5	주기 보고	비주기 보고	요청시 보고	미보고	미작성		
일반 관리 (25)	안전사고빈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고객불편/민원제기빈도	고객 불편 및 민원제기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법규위반빈도	관계법령 위반건수	5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업무협력수준	지시업무 이행, 긴급작업 수행, 대민·대관업무 수행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1 ~ -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